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9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최혁진 · 김정호  
김남희 · 송옥주 · 백혜련  
민병덕 · 서미화 · 용혜인  
전진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,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,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·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근거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34조의3 신설).



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4조의3(중앙방역대책본부)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행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(이하 “방역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방역대책본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.
- ③ 방역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<u>&lt;신    설&gt;</u></p>	<p><u>제34조의3(중앙방역대책본부) ①</u>  <u>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</u>  <u>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</u>  <u>유행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</u>  <u>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</u>  <u>우에는 해당 재난상황을 효율적</u>  <u>으로 관리하고 수습하기 위하여</u>  <u>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중앙방</u>  <u>역대책본부(이하 “방역대책본</u>  <u>부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</u>  <u>② 방역대책본부의 장은 질병관</u>  <u>리청장이 된다.</u>  <u>③ 방역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</u>  <u>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</u>  <u>로 정한다.</u></p>